

朝鮮初期 軍人送還問題와 朝明間 軍事外交

김 경 록*

1. 머리말
2. 조선초기 군사외교와 조명관계의 전개
3. 군인송환의 발생양상과 송환절차
4. 만산군문제와 군사외교
5. 맺음말

1. 머리말

원명교체와 여말선초의 시대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조선과 명은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충돌과 공조를 거듭하였다. 원명교체는 원 중심 조공체제에서 명 중심 조공체제로 전환된 것이며, 몽골중심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세계제국을 지향하였던 원에서 한족중심으로 정밀한 조공체제를 통해 중화주의를 지향하였던 명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이 시기 국제질서는 화이론에 입각한 주자학의 발전으로 사상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禮制를 강화함으로써 황제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던 홍무제의 통치방침이

*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반영된 국제질서였다.

신생 조선은 명 중심 조공체제에 편입됨으로서 건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원만한 대명관계를 통해 건국초기 위협요소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조명간 다양한 외교사건이 발생하여 긴장과 충돌이 있었지만, 조선은 국제정세의 긴박한 변화를 적절히 활용하고, 요동을 중심으로 명과 치열한 외교관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여 방대한 연구가 있어 여말선초 대외관계의 대략적인 모습이 밝혀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외교사안에 대한 연구가 아직 요원한 상황이며, 특히 군사외교에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선구적으로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중군사관계를 정리한 연구가 있지만, 개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한중 외교와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¹⁾ 현재까지 이 시기 군사문제를 다룬 연구를 정리하면, 명초 대명관계의 한 사건으로 인식한 기초연구가 있어 만산군의 존재를 학술적으로 관심을 제기하였으며,²⁾ 명의 정난지역과 관련한 조명관계에서 만산군을 다룬 연구가 있어 만산군을 조명간 문제로 본격적으로 거론하였으며,³⁾ 연대기자료에 입각하여 만산군의 유입과 송환을 정리한 연구가 있어 만산군 관련 다양한 자료를 모두 섭렵하여 정리하고 招撫문제와 연관시킨 점에서 학술적 기여를 하였지만 사건의 전개과정을 정리한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⁴⁾ 조선초기 조명간 유민의 종류와 발생원인을 정리하고, 연대기자료에서 송환을 분류·정리한 연구,⁵⁾ 조선초기 귀화인의 송환을 통해 조명관계를 분석한 연구⁶⁾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만산군을 군사외교 측면에서 심층 정리·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만산군문제를 중심으로 조명간 군사외교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산군문제

1) 서인한,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7.

2) 和田清, 『明初の滿洲經略 下』 『東亞史研究』, 1955.

3) 박원호, 「明 靖難의 役に 대한 朝鮮의 對應」 『亞細亞研究』 26권 2호, 1983.

4) 강성문, 「朝鮮初期 漫散軍의 流入과 送還」 『韓民族의 軍事的 傳統』, 2000, 도서출판 붕명.

5) 박성주, 「15세기 朝明간 流民의 發生과 送還」 『경주사학』 21, 2002.

6) 김경록,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현실』 83, 2012.

의 근원부터 종료시점까지를 연구의 시대범주로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려말 수시로 발생한 인구이동 및 逃軍을 시작으로 하여 만산군 문제가 조명간 외교현안으로 등장한 태종대를 중심으로 하고, 만산군이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15세기 중기 이후는 15세기 중기, 즉 세조대까지를 하한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조선건국 이후 태종대 만산군문제가 본격화되어 조명간 주요 군사외교로 성격이 강하였던 시기를 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후는 만산군의 성격이 변화되어 전개되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군인송환에 해당되는 부분은 태종대 만산군문제가기 때문이다.

군사외교연구의 선형적인 연구로서 전근대 군사외교의 개념을 정의하고, 조선초기 조선과 명의 외교환경 및 군사환경을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정리한다. 또한, 군인의 유입 및 송환에 대한 조명의 인식 및 구체적인 정책을 군사, 외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만산군문제의 발생원인, 전개과정, 군사외교로서의 성격 등을 밝혀봄으로써 군사외교사의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⁷⁾

2. 조선초기 군사외교와 조명관계의 전개

본장에서는 조선초기 군사외교 개념을 조명관계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시론적으로 정의한다. 먼저 현재까지 연구된 군사외교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군사외교는 군사 관계자들 사이의 교류, 이해증진, 공동의 문제해결, 기술적 협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군사개념과 외교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명확한 개념정의를 어려운 것으로 인식한다. 군사는 군대에 의한 전쟁을 주로 하며, 무력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외교는

7) 본 연구에서 군인송환 전반을 다루기에 필자의 학문적 역량이 한정되고, 지면의 한계도 있다. 이에 군인송환과 군사외교 연구의 시론적인 접근이라는 의미에 집중하여 군인송환은 만산군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범주, 형태,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군사외교의 개념정의와 분류, 국제정세와의 관련성 등을 살펴본다.

국가나 민간에 의한 협상을 주로 하며, 대화와 협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국력으로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군사외교에 가장 가까운 용어로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가 있다. 강압외교는 국가의 외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강압에 의한 설득을 목표로 하는 외교로 전쟁이 목적은 아니지만 무력행사를 전쟁 이전까지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외교이다.⁸⁾

군사외교의 개념정의의 위해서는 외교의 개념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외교란 국가목표에 의거 결정된 외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외교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를 군사와 연결시켜 국가목표에 따른 외교목표 및 국방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결정된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군사부문의 대외적 군사교류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대외군사교류협력은 외국과의 군사교류를 증진하고 협력분야를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기여하는 군사적 성격의 제반 대외활동이다.⁹⁾ 추가로 군사외교의 개념체계는 국가목표가 설정되면 외교목표/국방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외교정책/국방정책이 정해지며 이를 시행하는 활동으로 군사외교가 시행된다. 즉 군사외교의 목표설정 단계로부터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의 설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일련의 과정이 군사외교의 개념체계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대적 군사외교의 개념 및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조선초기 군사외교의 개념과 개념체계를 살펴보자. 무엇보다 외교개념의 기본 전체인 국제체제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선초기는 현대의 만국체제와 달리 조공체제였다. 특히 원 중심 조공체제에서 명 중심 조공체제로 전환되면서 조공체제의 이념, 제도, 절차 등이 상대적으로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는 시기였다.¹⁰⁾ 국가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설

8) 최영중, 「우리나라 군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전략연구』 32, 2004, 182쪽.

9) 배진수, 「한국 군사외교론」, 『국제정치논총』 37집 2호, 1998, 292쪽.

10) 김경록, 「조선시대 조공체제와 대중국사행」, 『명청사연구』 30, 2008, 93~98쪽; 「조선

정으로 인하여 조선의 입장에서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행할 수는 없었지만, 조공체제에서 설정된 조공제도 및 절차를 이행하되 조선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목표가 세부적으로 설정되고 이를 위한 군사정책이 수립되며 이에 따른 군사 활동이 전개되었다. 즉, 조선초기 군사외교는 명 중심 조공체제하에서 조선의 국가목표에 따른 외교목표 및 군사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결정된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군사부문의 대외적 군사 활동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선형적인 개념정의로 향후 보다 진척된 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공체제에서 군사부분을 대외적 군사 활동으로 정의했는데, 군사부분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대외적인 측면에서 조공체제하 군사부분은 조선에서 대중국관계에서 설정하고 인식하였던 외교사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외교에 관련하여 왕래하였던 외교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25개 외교사안별로 범주화하였다.¹¹⁾ 封典, 哀禮, 進賀, 陳慰(進香), 問安, 節使(歲幣-方物), 陳奏(辨誣-討逆), 表箋式, 請求, 錫賚, 鑼弊, 飭諭, 曆書, 日月食, 交易, 疆界, 犯越, 犯禁, 刷還, 漂民, 推徵, 軍務, 賻恤, 倭情, 雜諭 등 외교사안은 대중국관계에서 발생하는 외교사건을 범주화한 것으로 외교사건을 조선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가를 보여준다.¹²⁾ 이러한 대응은 조공체제 하에서 조선의 외교목표설정, 외교정책결정, 외교활동의 시행, 결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사안을 선별한다면 군사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 국제질서와 조명관계], 『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 7편, 2009. 4~9쪽;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양상」, 『중국학보』 60, 2009. 289~296쪽.

- 11)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194~195쪽.
 12) 김경록, 「동문회고를 통한 조선후기 외교사안 연구」, 『명청사연구』 32, 74~76쪽. 조선 후기 외교사안을 총정리한 것은 『동문회고』이며, 이러한 사안은 조선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조명, 조청 간에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안으로 범월, 강계, 봉전, 진주 등이며, 조선초기부터 외교관계를 외교사안 중심으로 인식하고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선별하면 진주(변무-토역), 교역, 강계, 범월, 범금, 쇠환, 표민, 군무, 왜정 등이 군사부분에 해당한다. 진주는 군사적인 사정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며, 교역은 군량, 군마 등 군수체계의 교역에 해당된다. 강계는 영토문제로 인한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며, 범월은 군사 및 불법적인 국경침입에 대한 문제였다. 범금은 양국에서 금지한 군수물자의 반입 및 반출에 관련된 것이며, 쇠환은 월경인 및 유입된 인원의 송환에 관련된 것이었다. 표민은 군사 및 군선을 포함한 표류에 관련된 것이며, 군무는 군왕 및 출병 등 직접적인 군사활동에 관련된 것이며, 왜정은 일본의 정세에 관련된 사항이다.

둘째, 군사부분의 국내적인 측면을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조선의 근본적인 법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법전으로 『경국대전』의 병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전은 우선적으로 중앙관직(京官職), 잡직(雜職), 지방관직(外官職), 토관직(土官職) 등 인사체계와 편제를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경아전(京衙前), 반당(伴尙), 외아전(外衙前), 역마(驛馬), 풀과 요식(草料), 무과시험과 취재(試取), 번을 서는 차레와 업적을 평정하는 분기(番次都目), 군사의 출근일수를 상정하는 규례(軍士給仕), 여러 도의 병선(諸道兵舡), 무과(武科), 임명장(告身), 업적 평정(褒貶), 수직 서는 규례(入直), 검열(擲奸), 순찰을 도는 규례(行巡), 수직 인원의 명단에 대한 보고(啓省記), 성문을 여닫는 규례(門開閉), 호위(侍衛), 연거푸 치는 큰 북(疊鼓), 연거푸 치는 큰 종(疊鍾), 병부와 표신(符信), 훈련과 사열(教閱), 위에 배속하는 규례(屬衛), 명부(名簿), 번을 서러 올라오는 규례(番上), 본도에 남아서 방어하는 규례(留防), 봉족을 주는 규례(給保), 군사대장의 작성(成籍), 군사를 본래의 신역으로 돌려보내는 규례(軍士還屬), 부역의 면제(復戶), 군역의 면제(免役), 휴가를 주는 규례(給假), 구완하고 돌봐주는 규례(救恤), 성곽과 보루(城堡), 군기(軍器), 병선(兵船), 봉화(烽燧), 나라의 마구간과 목장(廐牧), 풀의 저축(積菑), 운반선의 호송(護舡), 사신과 고을원의 영접과 호송(迎送), 여행증명서(路引), 불씨 바꿈(改火), 화재의 단속(禁火), 잡직 부류(雜類), 형벌의 적용(用刑)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정리하면 인사(관직), 수송, 군수, 군역, 무기, 호위, 통신, 훈련, 사열, 방어, 군적, 성곽, 군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 밖에 병법, 전술, 지도 등 다양한 영역이 있겠지만,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의 성격상 세부적인 것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가능하다. 즉, 조선은 군사부분을 인사에서 군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류하여 인식하고 운영하였다. 대외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은 진주에서 왜정까지의 대외적인 군사부분을 적용하고, 이를 인사에서 군율까지의 대내적인 성격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선의 국가목적이라는 큰 목적하에서 외교목적과 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군사부분의 다양한 대외적 활동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초기의 군사외교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원에 대한 정벌을 시작하며 홍무제는 華夷論의 관점에서 명 중심 조공체제를 천명하였다. 명이 직접 지배하지 않더라도 책봉을 통하여 내정과 외교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며, 황제국으로서 명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였다.¹³⁾ 대외적으로 명 중심 조공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내적인 통일과 정 및 일원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해야 하는데, 주요 접경지역 및 전략적 요충지에 衛所를 설치하여 軍政을 실시하고자 하였다.¹⁴⁾

명은 고려에 대해 군마조달, 원과의 군사적 협조관계 단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왕즉위 이후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외교단절을 강제하는 등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요동을 중심으로 한 군사외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上都를 점령한 명 홍무제는 1371년(공민왕 20, 홍무 4) 遼東衛를 遼陽에 설치하여 요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항복하였던 원의 平章 劉益이 피살되자 定遼都衛指揮使司를 설치하고 馬雲, 葉旺을 도지휘사사로 삼아 요동의 여러 위를 총괄하도록 하였다.¹⁵⁾ 본격적인 요동경략을 시작하면서 원 잔존세력으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던

13)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 2011, 4쪽.

14) 郭紅, 于翠艷, 「明代都司衛所制度與軍管型政區」, 『古代軍事研究』 2004年 第4期, 79~80쪽.

15) 『명사』 권 134, 열전 22, 葉旺: 『명대조실록』 권 66, 홍무 4년 6월.

것이다. 이 당시 요동의 대부분 지역은 나하추를 비롯한 원 잔존세력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려는 명의 요동진출에 주목하여 복원세력 및 나하추 등과 통교하고 있었다.

명 홍무제는 중원을 확보한 뒤 우선적인 영토정책으로 요동경략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요동경략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요동에 거주하는 인민에 대한 회유정책이었다. 이는 원의 영토는 모두 명의 영토라고 천명하였던 영토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명은 因地主義 원칙에 따라 현재 확보한 영토에 대해 그 구성원을 자국민으로 주장하고 철저한 관리권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鐵嶺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開元路에서 관할하던 軍民이 소속해 있던 곳이니, 중국인·女真人·達達人·高麗人を 그대로 遼東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⁶⁾ 특히, 이전부터 요동에 소속된 고려인은 명의 관속이므로 명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경이 이미 정해졌으니 상호간에 각자의 영토를 지켜 함부로 침월하지 않도록 고려에 통보하였다. 이러한 명 홍무제의 정책은 고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여 요동정벌이 실행되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 교체의 단초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나하추를 비롯한 원 잔존세력의 군사적인 기반을 형성하였던 여진족을 회유하고, 고려와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명의 요동경략은 군사적 정벌, 대민 회유책, 주변국에 대한 외교활동 등이 병행되어 추진되었다. 1387년 宋國公 馮勝을 征虜大將軍으로, 穎國公 傅友德과 永昌侯 藍玉을 左右副將軍으로 한 20만 명의 북벌군이 복원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을 시작하였다.¹⁷⁾ 북벌군은 大寧을 점령하고, 요동의 강력한 원 잔존세력이었던 나하추를 압박하여 金山까지 진출하였다.

침차 항복하는 세력이 많아졌는데, 특히 拔金完哥가 휘하 세력들을 거느리고 來附하자 홍무제는 指揮僉事 李文과 高顯, 鎮撫 杜錫을 파견하여 奉

16) 『명태조실록』 권 187, 홍무 20년 12월 입술. 홍무제는 刑部尙書 唐鐸으로 하여금 기근이 심하였던 산동지방에 鈔 百萬錠을 보내어 登州, 萊州의 주민을 구휼하도록 함과 동시에 요동의 인민에 대한 정책을 천명하였다.

17) 『명태조실록』 권 180, 홍무 20년 정월 계축.

集縣에 철령위를 설치하였다. 이후 철령위 설치를 고려에 통보하였다.¹⁸⁾

요동경략을 추진하면서 홍무제는 요동문제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였다. 비록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요동병력의 피로누적과 변경에서 군수지원의 한계로 인한 이탈문제였다. 당시 요동에 진주한 군대는 많은 전쟁경험을 가진 강병이었지만, 몽고와의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다. 특히 군수지원을 위한 배급선이 중원 본토에서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역을 설치하여 군량미를 비축하였지만 이에 대한 방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나하추가 명의 요동경략 전진기지인 牛家莊을 공격하여 군량 10만 여 석과 군사 5천명을 죽인 사례와 같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취약점을 보인 사례에서 확인된다.¹⁹⁾ 비록 이후 지속적으로 위소를 확대하고 역참을 강화하였지만 군사적 취약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여년의 요동경략을 추진한 이후인 1395년(홍무 28)에 요동경략의 총책임을 맡고 있던 武定侯 郭英에게 홍무제가 칙유한 내용을 통해 홍무제가 고민하였던 요동문제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다. 홍무제는 광영이 추진하던 遼王官室의 조영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遼東軍務의 핵심은 비록 강병으로 전쟁을 잘 치루고 있지만, 군역이 가중하고 전투피로가 축적되어 군사들의 이반이 염려되며, 무엇보다 군수지원의 어려움이 있고 조선과 접경한 상황에서 군무이탈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²⁰⁾ 명의 입장에서 요동경략을 추진하면서 이미 대단위 만산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군사외교의 대상으로 조선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의 적극적인 요동경략과 지속적인 회유정책으로 명의 요동지배는 확장되었다. 점차 고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고려와 조선의 대명관계는 군사적인 긴장과 함께 대립과 화의의 관계를 거듭하였다. 명과의 국경문제가 외교현안으로 등장할 무렵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교체가 일어남으로써 국

18) 『명태조실록』 권 189, 홍무 21년 3월 신축; 『태조실록』 1권, 총서.

19)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2007. 221쪽.

20) 『명태조실록』 권 238, 홍무 28년 4월 신미.

경문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조명관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명 중심 조공체제를 인정하고 이에 편입되어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조선은 적극적인 대명관계를 위해 명의 조공제도를 준수하고, 우호적인 대명정책을 시행하였다. 태조는 즉위와 동시에 조선의 건국을 명에 통보하고 명의 필요사항이었던 군마조달을 위해 진헌마를 보냈으며, 황태자의 죽음에 대해 擧哀하고 조문사를 파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은사, 진하사, 성절사 등 각종 사절을 정기, 부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명의 조공제도에 입각한 사신왕래를 철저히 시행하였다.

실질적인 조명관계의 시작은 왕조교체 및 조선의 건국을 명에 통보하여 명의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요동에 진헌마 1천 필을 교부하여 우호관계를 시작하였다. 뒤이어 1392년 7월 17일 수창궁에서 즉위한 이성계는 18일 명에 사신을 보내자는 도평의사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8월 29일 前密直使 趙琳을 파견하여 조선건국의 표문을 전달하고, 조선의 국호선정을 의뢰하여 황제국으로서의 명의 위상을 제고시켰다.²¹⁾

이 과정에서 조선은 송환문제에 적극적이었다. 조선에서 명으로의 송환은 명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한 송환도 있지만, 고려말 요동에 넘어간 권력자의 관하인민을 송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식적인 송환은 왜구에 사로잡혔던 탈출한 溫州府 樂淸縣사람 李順 등 3인을 남경으로 보내면서 시작되었으며, 왜구를 퇴치하며 사로잡은 중국인 李唐信을 요동에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明使 脫歡不花가 예전의 管下人民을 송환하도록 요구하여 조사하여 모두 송환하였다.²²⁾ 이는 조선의 입장에서 송환을 통한 대명관계에서 외교적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취한 조치였다. 그러나 탄환불화는 요동도사에서 파견된 사신이고, 남경의 흥무제가 직접 파견한 사신은 아니었다. 즉, 탄환불화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송환을 요구한 것이며, 흥무제가 직접적으로 송환문제를 거론한 것은 欽差內史 黃永奇가 조서를 가지고 오면서 시작되었다.

21) 『태조실록』 권 2, 태조 1년 11월 병오; 권 3, 태조 2년 2월 경인.

22) 『태조실록』 권 2, 태조 1년 11월 병술; 권 3, 태조 2년 3월 갑술; 4월 정축.

한편, 조선은 명의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국경에서 가까운 주요 세력에 대한 외교관계를 지속하였다. 명의 대조선 외교통로였던 遼東都司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燕王府, 遼王府, 寧王府 등 주요 親王세력에 대해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외교관계를 발전적으로 도모하였다. 홍무제는 명 건국초기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친 南京이 정치, 경제적 중심지였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으로 명을 위협하던 몽골세력에 대한 군사적 대비로 변경, 특히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주둔시켰다. 군사적 필요성은 높았지만, 정작 북변방비군의 통수권을 재지의 무장세력에 넘겨준다면 신생 국가의 위협세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親王을 주요 군사요충지에 책봉하는 諸王分封策을 채택하였다.

분봉된 친왕 가운데 조선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연왕, 요왕, 영왕은 요동을 향한 명의 전진기지였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이들과의 교류는 단순한 외교차원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군사외교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미 이성계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던 고려말 同知密直司事 安淑老를 就藩한 연왕에게 파견하여 예물을 전달하며 교류하였으며, 요왕과 영왕이 就藩하자 前密職使 朴原, 前密職副使 柳雲을 각각 파견하여 禮聞하였다. 조선의 이러한 신속한 외교활동은 명 중앙정부의 경계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²³⁾

원간섭기 이후 많은 고려인이 요동으로 옮겨가 거주하였으며, 이들은 점차 지역민으로 정착하였다. 원명교체기 전란을 피하여 많은 고려인이 고려로 다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요동의 군적에 올라 있었으며, 원을 대신하여 요동을 장악한 명은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요동 거주 고려인과 고려로 옮겨간 이들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려와 조선의 왕조교체가 이루어졌다. 신생 조선은 요동거주 고려인 및 되돌아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포섭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조명간 군사외교에서 요동은 국경문제, 군인송환(만산군문제),

23) 『고려사』 권 45, 공양왕 2년 6월 경진; 『태조실록』 권 3, 태조 2년 4월 경진; 권 5, 태조 3년 2월 을축.

여진족회유 등 다양한 이유로 핵심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지리적으로 요동은 북평과 연결되어야 군수지원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은 홍무연간 복원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요동에 定遼衛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 육로로 군량을 보급하기 어렵게 되자 산동에서 수로로 군량을 운송하였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⁴⁾ 정난지역 기간 연왕은 산해관까지 요동세력을 압박한 뒤 별다른 군사적 압박을 하지 않았다. 즉, 關外로 몰아내면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군량의 조달이 어려웠던 요동을 위해 건문제는 수로로 군량을 조달하고자 하였지만, 풍랑으로 군선이 전라도에 표류하기도 하였다.²⁵⁾

한편, 조선초기 조명간 군사외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명간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로서 전투는 없었다. 그러나 상호간 군사적 대립은 정치적 위기에 따라 수시로 고조되어 전개되었다. 왕조교체의 원인이 되었던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은 명에 대한 고려의 군사적인 대응이었지만, 실제 명군과 조우하지는 않았다. 또한,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경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적 대립이 있더라도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다. 정도전이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법훈련을 시켰지만 구체적인 요동정벌기도로 보기는 어렵다.²⁶⁾ 무엇보다 역성혁명으로 인한 왕조교체에서 신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제국으로서 명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명과 군사적인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할 문제였다.

명의 입장에서든 비록 몽골세력을 북쪽으로 몰아내었지만, 여전히 요동 지역에 몽골세력이 잔존하여 수시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기존 요동에 거주하던 여진족에 대한 회유와 통치가 완성되지 않고 장거리의 군수지원선을 가졌던 요동지역에서 조선과의 군사적 충돌은 명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²⁷⁾ 이러한 명의 입장은 홍무제가 자손들에게 국가

24) 『明史』 권 130, 열전18, 仇成; 권 131, 열전 19, 吳禎.

25) 『태종실록』 권 1, 태종 원년 5월 무술.

26) 박홍규, 「정도전의 공요기도 재검토」, 『정치사상연구』 10집 1호, 2004, 13~14쪽.

27) 『명태조실록』 권 255, 홍무 30년 9월 무자.

통치의 원칙으로 제시한 『조훈조장』에 조선과 전쟁을 일으키지 말 것을 제시한 점, 조선 건국초 조명관계에서 최대의 외교사안이었던 표진문 문제에 대해 오군도독부 및 병부에서 출병할 것을 건의하자 이를 제지하고 예부로 하여금 외교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⁸⁾

둘째, 조명간 군사협력의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한 사례는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왜구의 출현과 여진족에 대한 공동대응이었다. 홍무연간 왜구는 해방건설을 위한 홍무제의 노력에 걸림돌이었으며,²⁹⁾ 왜구퇴치를 위한 군사활동이 빈번하였다.³⁰⁾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구의 이동경로에 있던 조선과의 적극적인 군사정보교류를 통한 왜구근절을 도모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서 왜구는 고려말부터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공민왕은 왜구의 금압을 요청하는 사절을 일본에 파견하기도 하였다.³¹⁾ 세종초에 시행된 대마도정벌은 조명간 군사정보교환을 통해 왜구의 주력이 명나라 연안을 노략질하는 시기에 단행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공동 대응과 함께 왜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외교적으로 조선에 압박하기도 하였다.³²⁾ 즉, 조명간 군사협력은 공동대응의 성격과 함께 군사외교에서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셋째, 도망한 군인이나 표류한 군인의 송환 등이었다.³³⁾ 절강성이나 산둥성에서 요동으로 군량을 운송하는 군인이 표류하여 조선의 해안에 이르면 조선에서 이들을 요동으로 송환하거나, 요동의 군적에 오른 조선인이 조선으로 귀환하자 이를 송환한 것과 전란으로 인한 만산군의 귀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송환문제는 조명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상호간에

28) 김경록, 「조선초기 중계변부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2006. 5~6쪽; 『명대조실록』 권 257, 홍무 31년 4월 경진.

29) 王日根, 「明代海防建設與倭寇, 海賊의熾盛」, 『中國海洋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年 第4期. 13~14쪽.

30) 1387년(홍무 20)에 홍무제는 11衛, 13所, 44巡司를 설치하여 왜구를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영락연간에는 水寨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31) 이영,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공민왕 15년(1366)의 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108쪽.

32) 『세종실록』 권 101, 세종 25년 7월 임오.

33)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7월 기유.

대부분은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몇몇 사례에서 군사, 정치적 문제가 결합되어 외교현안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만산군의 경우처럼 대규모 군인이 유입되고 송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건이고, 대부분이 소수의 도군 또는 표류인의 송환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송환에 있어 군사,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의 사정이나 정치적 치약점을 명에 노출한다는 점이었다. 조선에서 명으로의 송환뿐만 아니라 명에서 조선으로 송환하는 경우도 있어 표류인에 관련한 사항은 상호성을 가진다.³⁴⁾ 구체적인 파악은 뒤에서 다루도록 한다.

넷째, 각종 군수물자와 무기에 관련된 사항이었다. 몽골에 대한 대응으로 명이 군마의 조달을 위해 조선과 말 교역을 한 것과 각종 무기를 조선에서 구입하고자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³⁵⁾ 무기체제와 관련하여 조선과 명은 상호간에 절대적인 교류금지가 원칙이었다. 명은 조선의 지속적인 무기관련 교역요구에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조선도 총통이나 지도 등이 명에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牛馬의 교역은 명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었다.³⁶⁾ 즉, 명 중심 조공체제에서 군수물자와 무기에 관련한 조명간 군사외교는 명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부분적으로 우마교역을 통해 조선의 외교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활동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사외교의 특징적인 양상을 전제로 군인송환을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시대 군인을 포함한 모든 송환은 기본적으로 犯越을 전제로 한다. 범월을 하여 조선으로 들어온 이들을 逃軍, 流移民, 逃來人, 漫散軍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렀지만, 본 글에서는 군인에 한정하여 逃軍이라 지칭하고, 태종대 주로 넘어온 이들을 漫散軍이라 지칭한다.³⁷⁾ 조선시대 범월은 그 이유

34) 『세종실록』 권 101, 세종 25년 7월 임신.

35) 『吏文』 卷 2, 禮部爲馬價事. 홍무제는 조선이전에 고려에 대해서도 군마조달을 명분으로 말교역을 요구하여 역성혁명이 일어난 1392년~1393년에 1만 필의 말을 교역하였다.

36) 『태종실록』 권 2, 태종 1년 9월 정해.

37) 만산군이란 역사용어가 실록을 비롯한 연대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주로 태종대에 집중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글에서 만산군은 태종대 도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여하를 불문하고 금기시 되었던 사항이었다. 범월에 대한 금기는 명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범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자료는 없지만, 참고자료로 『동문회고』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동문회고』는 조선의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책으로 외교사안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구성되었다.³⁸⁾ 외교사안은 조선과 중국간에 형성된 외교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犯越, 刷還 등의 항목에 의하면, 조선과 중국 상호간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왕래하거나 체류하는 인물은 철저히 조사하여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비록 조선후기에 편찬되었지만, 조공체제하에서 전반적으로 대중국관계에 적용되었던 원칙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조선과 명은 군인을 포함한 모든 범월인, 도망인에 대해 상호 송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범월의 또 다른 표현으로 越境이 있다. 조선의 입장에서 월경은 國法과 經濟를 혼란시켜 국가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인식하였다. 특히, 조선에서 요동으로 월경하는 경우는 조명간 외교문제로 대두하여 조선의 외교적 난처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하였다. 월경의 원인이 전란, 기근, 밀무역 등 다양하지만, 월경행위는 왕실의 다스림(王政)에 대한 불만 요소 또는 미흡함을 반영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월경에 대한 금지는 월경인이 명에 의해 체포되어 신문받는 과정에서 조선의 정세 및 각종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되었다.

월경의 유형을 살펴보면, 밀무역, 승려의 越境, 耕田, 潛探 등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변경거주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많았다.³⁹⁾ 월경하여 요동인 및 여진족과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거나, 실제 방치된 경작지를 경작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월경하는 형태 등 다양하였으며, 이 모든 월경에 대해 조선과 명은 강경하게 금지하였다.⁴⁰⁾

38)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197쪽.

39) 『태조실록』 권 7, 4년 2월 을축; 5월 경술; 『태종실록』 권 11, 태종 6년 4월 무인; 권 34, 태종 17년 7월 을사; 『세종실록』 권 26, 세종 26년 10월 계해; 권 57, 세종 14년 9월 갑자; 권 112, 세종 28년 5월 신묘; 『성종실록』 권 13, 성종 2년 12월 기묘.

40) 『태조실록』 권 2, 태조 1년 12월 경오. 조선은 監察을 義州 등지에 보내어 국경을 넘어

조선은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월경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태조대 都評議使司는 월경을 국왕이 몸소 검소함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익을 노려 몰래 국경을 넘어 말뽕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주범과 공범을 모두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태조는 평안도 사람으로 국경을 넘어갔던 金法華, 鄭大 등 7인을 저자에서 목을 베어 월경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천명하였다. 조선의 월경에 대한 대응은 法典 『經濟六典』에 명시하여 엄금하였다.⁴¹⁾

또한, 야인정벌을 통하여 확보한 국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민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여진에 투탁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월경을 금지하였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영토정책에 대해 주민이 반발하자 조선의 입장에서 강경한 대응을 한 것이었다. 세종대 함길도의 4진에서 월경하는 일이 빈번하자 형조에 수교를 내려 엄금하고 월경자는 참형으로 다스렸다.⁴²⁾ 한편, 월경은 조선의 정치, 군사, 외교적 목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다. 요동이나 여진족의 거주지에 간자를 몰래 월경시켜 정세 및 각종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는데, 일부 요동의 명 관원에 잡혀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고, 명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하면 이를 금지하기도 하였다.⁴³⁾

3. 군인송환의 발생양상과 송환절차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노략되어 주로 요동에 거주하였으며, 이후 胡拔都, 高鐵頭 등의 노략으로 인구도 遼陽으로 끌려가

교역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41) 『태종실록』 권 6, 태조 3년 6월 기사; 권 7, 4년 2월 을축; 권 15, 8년 3월 무오.

42) 『세종실록』 권 97, 세종 24년 9월 정축.

43) 『성종실록』 권 224, 성종 20년 1월 임신.

東寧衛에 소속되었다. 요동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선의 고향과 친척들과 연락하며 왕래하여 요동지역에 전란 및 기근이 들면 많은 인구가 조선으로 도망하여 숨어 살았다.⁴⁴⁾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쇄환은 일정한 공식적 절차가 없어 조명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⁴⁵⁾ 명에서 도망하여 조선에 몰래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쉽지 않았지만, 요동도사에서 자문으로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면 조선은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쇄환하였다.

원래 조선인이었지만, 명 관군의 명부에 성명이 기재되면 실질적인 명나라 군인으로 분류하여 명의 요구에 따라 송환한다는 것이 조선의 외교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망하여 조선의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는 도군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여기서 조선과 명 사이에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실태파악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따라 파악된 도군의 송환에 있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역시 시대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태조대 일부 요동에서 도망 온 군인을 정보파악의 목적에서 조선에 정착시켜 거주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⁴⁶⁾ 대표적인 경우가 태조대 요동에 잡혀갔다가 명군과 몽고군의 전투에서 도망하여 조선으로 들어 온 金松을 태조는 안심시켜 직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과 정종대 조선인으로 東寧衛에 소속되었다가 요동의 役事가 번다하여 도망쳐 돌아온 이를 정착시킨 것 등이다. 특히, 동녕위에서 도망온 이를 통해 조선은 연왕의 기병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⁴⁷⁾

명의 도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수준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은 도군문제를 軍政과 關津의 차원에서 인식하였다.⁴⁸⁾ 군정의 軍務, 軍情, 軍事, 軍役, 戰馬, 軍器 등과 관진의 제 문제와 동일하게 인식하여 중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명은 군정분야에서 법규를 어겨 軍國의 막중한 일을

44) 『태종실록』 권 3, 태종 2년 2월 정사.

45) 김경록,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현실』 83, 2012. 224~227쪽.

46) 『태조실록』 권 3, 태조 2년 6월 을해: 권 14, 7년 6월 갑인.

47) 『정종실록』 권 1, 정종 1년 3월 임신.

48) 『大明律集解附例』 卷 14, 軍政, 從征守禦官軍逃: 卷15, 關津, 遞送逃軍妻女出城: 私出外境及違禁下海.

문란하게 하는 범주를 官軍을 함부로 조달, 軍務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음, 軍情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음, 변경의 軍需를 지연함, 軍事를 誤報함, 征伐의 기한을 어김, 軍役을 회피함, 맡은 곳을 지켜내지 못함, 從軍하여 노략질함, 良民을 겁박함, 戰馬와 軍器를 팔아먹거나 훼손함, 軍器를 숨김, 軍役을 함부로 縱放하거나 유력자가 관군을 부림, 전장에 나간 관군이 도망함, 軍屬을 구출하지 않음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군정분야에서 도군문제는 매우 중시할 뿐만 아니라 關津분야에서 關津을 사사로이 넘어간 경우, 路引을 위조하여 관진을 통과한 경우, 關津에 머물며 어지러운 경우, 해금을 어긴 경우 등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명의 법규에서 월경은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을 벗어나거나 상거래의 범주를 넘어간 경우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된다. 1390년(홍무 23) 감생으로 하여금 각 府州縣의 관리들과 함께 里甲人을 조사하고 도망한 戶口를 파악하여 연고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 原籍에 편입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으며, 이후 1421년(영락 19)에 거듭 原籍의 有司로 하여금 逃戶를 覆審하도록 하였다.

도군에 대한 원적 편입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홍무제는 순검사를 천하의 요충지에 설치하여 도군, 도인을 색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軍官, 軍人 등이 軍役을 이탈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가를 규정하였다.⁴⁹⁾ 또한, 명의 국내적인 개념의 월경이 아닌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는 보다 엄하게 처벌하여 방지하고자 하였다.

군인의 송환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군인의 송환은 단순한 군인 자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거주지를 이탈하는 군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반하여 호 단위로 도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도망한 군인의 송환을 요구하는 명의 외교문서와 조선에서 송환할 대상을 조사하거나 정리할 때 대부분 호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49) 『大明會典』 卷 19, 戶口1, 逃戶: 卷138, 關津1, 關津巡檢司; 『大明律集解附例』 卷 14, 兵律, 軍政, 縱放軍人歇役.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⁰⁾ 가족을 동반한 이탈과 송환은 자칫 일반적인 이탈민과 군인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기존 연구에서 귀화 및 송환의 중요 성격이었던 군인송환을 간과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명으로 송환되는 군인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逃軍이었다. 즉, 각종 전란이나 기타 문제로 인하여 명에서 조선으로 도망한 군인을 쇄환하여 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둘째, 여진족에 의해 포로나 피로된 군인이 조선으로 도망하거나 조선에서 획득하였을 경우에 이를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셋째, 군량을 수송하거나 기타 이유로 조선에 표류한 군인을 명에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도군은 주로 전란으로 조선에 넘어온 군인이며, 대표적으로 원명교체기, 靖難之役, 韃靼의 침입시기에 발생하였다. 가장 숫자가 많았던 것은 건문제와 연왕의 전쟁으로 넘어온 만산군이었다. 원명교체기 도군은 주로 고려인으로 요동에 거주하던 이들이 고려로 넘어온 것이며, 명 중심 조공체제가 확립된 홍무연간을 거치면서 도군의 존재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건문제와 연왕 사이의 정변이 발생하자 전례가 없이 많은 도군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이들을 만산군이라 하는데, 조선과 명, 건문제와 연왕 등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조명간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산발적인 변방의 문제로 인해 소수의 도군이 발생하여 조선으로 유입되기도 하였지만, 태조·태종대 만산군과 성격이 다르다.

여진족은 명 건국 이후 조선과 명의 영향력하에서 반독립적인 생활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웠다. 초기 농경단계에서 점차 영농생활을 확대하면서 절대적인 노동력 및 耕作경험을 가진 인구가 필요하여 조선과 요동지역에서 수시로 인구를 노략하였다. 여진족에 의해 피로된 인구는 대부분 농경노예로 활용되었다. 물론 노략되는 인구는 주로 농민이었지만, 일부 군인이 포함되었다. 특히, 조선과 명의 변경 인구에 대한 여진족의 노략은 심각한 문제로 조선과 명의 공동대응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여진족에

50) 『태조실록』 권 4, 태조 2년 8월 임인.

피로되었던 명나라 인구가 조선으로 도망오면 대개 명으로 송환되었는데, 1392년부터 1494년까지 송환된 인구가 215회에 2,468명이었으며,⁵¹⁾ 세종대 이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여진족에서 명인이 스스로 도망하여 조선으로 넘어온 경우, 정벌 등으로 조선에서 여진족으로부터 확보한 경우, 여진족이 조선에 공물 등으로 넘겨준 경우 등 다양한 경로가 있었다.

기타 군량수송 및 표류한 군인의 경우는 조명간 별다른 문제없이 송환이 이루어졌다. 물론 표류한 인원이 모두 군인은 아니지만, 군량수송에 관련하였다는 점에서 조선과 명은 크게 군인송환의 차원에서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시기 조명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지만, 명 중심 조공체제에서 표류인은 해당 국가에 송환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인, 사건적인 특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송환에 있어 조선의 각종 정보가 명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조선은 경계하였으며, 조명관계의 난제가 있으면 적극적인 표류인 송환을 통해 조명관계를 개선하고자 활용한 측면은 있다. 이외에 여말선초 조선과 명 연안에 출몰하였던 왜구에 피로되었던 한인이 조선으로 탈출한 경우, 일본에서 송환한 경우, 조선이 왜구소탕 과정에서 확보한 경우 등 군인 포함 한인을 명에 송환하기도 하였다.⁵²⁾

조명간에 송환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명과 조선의 회유정책이 충돌하면서였다. 양국의 회유정책 대상이었던 여진족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 외교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여진족 500여 명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으로 들어오자 명 홍무제는 鬱端사건을 빌미로 즉각 송환을 압박하였다.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한 조선은 명사 黃永奇가 귀국하는 편에 여진인 400여 명, 요동에서 도망 온 조선인 388명과 여진인 116명 등을 송환하였다.⁵³⁾ 조명간 송환요구와 이에 따른 송환은 명의 일방적인 요구와 억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조선은 여진인뿐만 아니라 요동에서 도망 온 조선인까지 포함시켜

51) 박성주, 「15세기 조명간 유민의 발생과 송환」, 『경주사학』 21, 2002. 132쪽.

52) 박성주, 2002. 위 논문. 134쪽.

53) 『태조실록』 권 3, 태조 2년 5월 정묘: 권 4, 8월 임인.

송환하였다. 이는 송환문제가 당시 사행폐쇄 등 조선에 대해 강경입장을 가진 명에 대해 조선이 외교적으로 풀고자 하였던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송환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가 모여 일정한 절차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조명관계에서 이러한 절차가 정립되기도 전에 유래없는 만산군문제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조선시대 송환절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조선은 대명관계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도군을 대부분 명으로 송환하였다. 명 중심 조공체제하에서 도군의 송환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에 기재된 송환사례를 정리하고, 조명간 외교절차를 적용하여 송환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군에 대한 인지는 일반적으로 변장의 보고 및 도군의 체포 등으로 조선에서 먼저 인지하였다. 이후 명에서 도군에 대한 사실 및 송환요구의 외교문서가 조선에 접수되면, 조선은 도군의 존재에 대해 파악하고 있더라도 왕명을 통해 변장에게 조사를 명하고, 남녀, 연령, 건강정도 등에 대한 변장의 상황보고에 근거하여 철저한 쇄환을 다시 명하여 조선의 쇄환노력을 부각시킨다. 도군의 송환은 대부분 요동도사에 인계하는 것으로 조선의 사행이 압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遼東使行을 임명하여 압령하는 경우도 있었다.⁵⁴⁾ 赴京使行과 달리 요동사행은 사행규모가 작아 주로 역관(通事)이 사신(押領官)으로 파견되었다.

〈표 1〉 朝鮮初期 對明 逃軍 送還表

송환시기	송환인원
1393년(태조2) 8월 입인	朴龍 등 122호의 388명
1395년(태조4) 정월 갑인	遼東來人
1395년(태조4) 2월 병술	遼東 逃軍 金不改 등 25명
1396년(태조5) 10월 임인	樓近道 등 25명
1401년(태종1) 정월 신묘	王和貴 등 36명
1402년(태종2) 12월 임신	林八刺失里 등 29명

54)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23~27쪽.

1403년(태종3) 정월 을사	남녀 3,649명
1403년(태종3) 3월 을해	起解 10,920명, 逃亡 2,225명, 病故 496명 등 13,641명
1403년(태종3) 4월 신미	남녀 60명
1403년(태종3) 11월 신축	230명
1403년(태종3) 11월 신축	153명
1404년(태종4) 9월 계해	遼東逃軍 杜添保
1404년(태종4) 12월 임진	逃軍 金加勿 등 남녀 28명
1405년(태종5) 9월 임자	東寧衛 逃軍 金帖木兒
1405년(태종5) 11월 임자	遼東人 曹成 등 11명
1406년(태종6) 8월 계묘	宋德玄, 金小金 등 남녀 419명
1407년(태종7) 3월 계유	劉山城 등 2,000명
1407년(태종7) 5월 정축	丁祿吉 등 746명
1407년(태종7) 6월 병술	金必果 등 831명
1407년(태종7) 8월 기축	李白吉 등 549명
1407년(태종7) 8월 임진	病故 928명
1408년(태종8) 4월 갑진	東寧衛 漫散軍 劉思京 등 781명
1408년(태종8) 5월 기미	李隆 등 남녀 159명
1408년(태종8) 7월 임술	劉莫遂 등 99명
1408년(태종8) 9월 갑술	鄭世 등 男婦 114명
1412년(태종12) 10월 무진	遼東人 李哲 등 12명
1413년(태종13) 4월 기사	高中金, 康吉 등
1415년(태종15) 6월 기사	朴蒙舍 등 23명
1415년(태종15) 6월 신사	金南吉 등 6명
1415년(태종15) 9월 을묘	賊人 金良白 등 2명
1416년(태종16) 7월 갑오	流移人
1419년(세종1) 정월 기사	金得觀
1419년(세종1) 7월 기유	朴上佐 등 10명
1421년(세종3) 4월 기미	金加勿, 金沙安, 金乃巨 등 남녀 5명
1422년(세종4) 4월 갑진	唐人 13명
1422년(세종4) 7월 기축	남녀 50명

1422년(세종4) 7월 경오	男婦 23명
1422년(세종4) 8월 을유	男婦 19명
1422년(세종4) 8월 갑인	宋得龍 등 33명
1422년(세종4) 10월 신묘	35명
1424년(세종6) 3월 정유	逃軍 朴大難 등 3명
1429년(세종11) 9월 병오	金隆
1430년(세종12) 5월 계묘	王養孫 등
1433년(세종15) 11월 기미	王兒漢 등 2명
1435년(세종17) 9월 을축	三萬衛 中所千戶 楊蠻皮 등 남녀 35명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은 송환된 도군에 대해 일차적으로 도망경위, 같이 도망한 인원, 도망하여 거주한 곳 등을 상세히 심문하여 송환된 도군 이외에 추가로 조선에 남아있는 도군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문연간에 조선으로 도망하였던 王和貴 등 36명이 요동도사에 호송되자 統兵官이었던 鎭東將軍이 이들을 심문하여 함께 도망한 鐵嶺衛 군인 高安住 등이 조선에 남아있음을 밝혀내어 左軍都督府에 보고하였다. 좌군도독부는 이를 황제에게 아뢰어 조선에 남은 인원의 쇠환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보고를 받은 황제는 좌군도독부로 하여금 조선에 외교문서를 보내어 철저한 쇠환을 요구하도록 지시하면 좌군도독부는 자문을 조선에 보내어 쇠환을 요구하였다.⁵⁵⁾

명의 쇠환요구가 있으면 조선은 의정부로 하여금 쇠환을 총괄하도록 하는데, 의정부는 도망온 군인과 가족을 각 주(州)·군(郡)·현(縣)에 수용 감금하고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국왕은 별도의 호송관을 지정하거나 명의 사신에게 그 현황을 알려 점검한 뒤 요동으로 압령하였다. 요동으로 도망한 군인을 압령할 때는 남녀별 총수, 도망하여 찾지 못한 수, 病故한 수 등을 명시한 외교문서를 함께 명에 전달하였다.⁵⁶⁾

55) 『태종실록』 권 5, 태종 3년 1월 신묘.

56) 『태종실록』 권 5, 태종 3년 3월 기해.

4. 만산군문제와 군사외교

만산군문제가 조명간 외교문제로 처음 부각된 것은 정종대였지만, 태종대 본격화되어 일정하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만산군은 이후 세종, 성종대 달단에 의해 요동에 병란이 일어나면 지속적으로 외교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명나라는 홍무제의 사후 유래없는 정난지역을 통하여 정권이 교체되는 격변기였다.

1370년 燕王에 봉해진 朱棣는 1380년에 北京을 근거지로 세력을 확장하여 1391년에는 만리장성을 넘어 몽골을 원정하기도 하였다.⁵⁷⁾ 명나라의 최강 군대를 보유한 연왕을 황명으로 삭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였다. 동북동생인 周王의 庶人 강등 및 雲南귀양, 湘王의 자살, 岷王, 齊王, 代王의 폐위 등에 대해 연왕은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였다. 결국 심각한 군사적 오판을 하여 삭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건문제는 삭변정책을 감행하였다. 이 시기 각종 역사가 많아지자 노역을 견디지 못하고 조선 출신 동녕위 군인이 조선으로 도망하기도 하였다.⁵⁸⁾

정난의 역(1399~1402)의 기간 동안 전황은 만산군 및 조명간 군사외교에서 중요한 사항이었다. 연왕은 기병하여 건문제가 출정시킨 耿炳文의 군대를 眞定에서 패주시켜 초반 승세를 잡았다.⁵⁹⁾ 연왕의 기병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남쪽의 건문제군대가 아니라 후방의 요동군대였다. 이에 덕주에 주둔한 이경룡의 군대보다 요동을 먼저 제압하고자 하였다. 연왕의 기병소식을 永平守將 各亮으로부터 치보받자 鎮守遼東 江陰侯 吳高, 都督 耿獻, 楊文 등 요동군대가 永平을 포위하였다. 연왕은 장남으로 북경을 맡아 이경룡군을 방어하도록 하고, 요동군과 전투하였다.

57) 홍무제의 4남이었던 주체가 諸王分封策에 따라 연왕에 봉해진 때는 주체의 나이 11세였다. 실질적으로 北平에 駐在한 것은 성인이 된 21세였다.

58) 『정종실록』 권 1, 정종 1년 3월 임신. 당시 동녕위 소속 조선출신 군인이 조선으로 도망하여 명나라 정변 소식을 전하였다.

59) 『明史』 卷 5, 成祖本紀.

연왕과의 첫 전투였던 眞定전투에서 대패한 건문제는 연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던 廣寧의 遼王, 大寧의 寧王을 소환하였는데, 연왕부의 동쪽에 위치한 요왕은 소환에 응하였지만, 동북쪽의 영왕은 불응하였다. 결국 요동은 건문제의 편에서 연왕과 싸웠지만, 영왕은 연왕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다.⁶⁰⁾ 조선의 입장에서 바다를 통해 연결된 남경의 건문제와 인접한 요동은 여전히 외교적으로 정통성과 우선권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연왕과 군사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었다. 반면, 연왕의 입장에서 남쪽의 건문제군대 뿐만 아니라 동쪽의 요동세력은 배후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연왕은 영평을 포위한 요동군을 산해관으로 몰아내고, 곧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어 대녕을 공격하였다. 대녕을 확보하여 寧王이 보유하고 있던 三護衛軍을 연왕군에 편입시켰다.⁶¹⁾ 건문제 군대와 전쟁 중에 연왕은 몽골군으로 하여금 수시로 요동을 공격하도록 하여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였다.⁶²⁾

한편, 일차 북평을 포위하였다 산해관으로 퇴각한 吳高, 楊文은 수비에 치중하였다. 연왕측의 이간책으로 오고는 삭탈관직되어 廣西로 이주하였으며, 양문은 요동을 수비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시기 요동군은 연왕군과 실질적인 전투는 없었지만, 군적에 오른 사람을 징병하여 경계를 강화하였다.⁶³⁾ 요동군을 지휘하였던 양문은 1397년 征虜前將軍로 강족을 토벌하였으며, 江陰侯 吳高 역시 같이 종군하였다.⁶⁴⁾ 전쟁경험이 없었던 인물도 아니었지만, 연왕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연왕은 1400년에 들어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하여 대동을 공격하고, 韃靼을 회유하여 군사력을 보강하였으며, 1402년 5월 장강을 넘고, 6월에 남경을 점령함으로써 전쟁은 연왕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전란이 종료되자 영락제는 1402년 7월 1일에 황제로 즉위하며 즉위조서를

60) 『國權』 卷 11, 建文 元年 9月 丁卯.

61) 『명태종실록』 권 3, 영락 원년 9월 임진; 임인.

62) 『國權』 卷 11, 建文 3年 11月 乙卯.

63) 『명태종실록』 권 4, 영락 원년 11월 을해; 12월 정유.

64) 『명태조실록』 권 255, 홍무 30년 9월 을해.

천하에 포고하여 통치방침을 밝혔다.⁶⁵⁾ 이 가운데 송환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란 중 流移人民은 모두 原籍에 다시 올려 復業하도록 하고, 각지의 관군이었다가 漫散한 軍士는 原衛所로 복귀하고, 도망한 군사는 조서가 도착하면 1개월 이내에 복귀하면 죄를 묻지 않으며, 각 都司와 衛所의 官軍으로 상호간 포로로 잡거나 사망한 경우 등을 모두 홍무연간을 기준으로 귀환시키거나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정난지역의 전쟁기간을 거치면서 영락제는 요동과 여진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1401년 11월, 요동의 楊文이 永平을 공격하고, 薊州, 遵化 등을 점령하자 연왕은 柳江을 보내어 대응하도록 하였는데, 楊文은 昌黎에서 패하여 요동으로 물러갔다. 1403년 3월, 영락제는 大寧都指揮司를 保定으로 옮겼다. 원래 大寧都指揮司는 泰寧, 福余, 朶顏의 兀良哈 3衛를 총괄하던 군정기관이었는데, 寧王으로부터 3衛의 군사를 빼어 건문제군과의 전투에 활용하였던 바 있다. 또한, 1403년 3월, 영락제는 平江伯 陳瑄과 都督僉事 宣信을 摠兵官으로 삼아 江南에서 軍糧을 요동과 북경에 海運하도록 하였다. 북방의 군비부족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이는 향후 常例化되었다. 이후 1403년, 直隸, 北京, 山東, 河南, 遼東 등에 기근이 들었으며, 3월에 韃靼이 요동을 침략하였다. 조선에 대해서 1403년 이방원이 조선국왕의 즉위를 알리고, 冕服과 書籍을 청하자 명의 허락을 받았다.

영락제는 연왕시절 주변 세력에 대한 회유를 통하여 우호관계를 형성하였다. 단적인 예로 태종 이방원이 명에 사신으로 가면서 연왕부를 방문하였을 때, 시위 1명만 있는 상황에서 이방원과 연왕은 면담하였으며, 이방원에 대해 극진한 대접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왕이 경사에 조회하는 길에 연도에서 이방원일행을 만나자 거듭 상면하여 면담하였다. 이러한 연왕의 태도는 연왕의 입장에서 조선은 동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향후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왕의 이러한 경향은 명중양정부의 경계대상이 되었으며, 연왕부와 교유한 조선에 대해 강력하게

65) 『명태종실록』 권 10上, 홍무 35년 7월 임오.

경고하고 징계하였다.⁶⁶⁾

조선에서 연왕의 기병을 처음으로 파악한 것은 정종 1년(1399) 3월이었다. 東寧衛의 군인이 요동에서 도망쳐 조선에 들어오자 이를 심문하여 연왕이 정난의 역을 준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⁶⁷⁾ 연왕이 전쟁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집중 양성하고 징발하자 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동녕위 군사가 조선으로 넘어왔으며, 이를 통해 건문제와 연왕의 대립을 파악하였다.

태종 2년 3월부터 연왕에 대응하여 싸웠던 요동군은 연이은 건문제군의 패배와 달단의 침략을 받아 2천여 명의 군인이 이탈하여 조선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연왕의 군대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남경을 압박하던 시기로 이미 요동 정요위의 많은 세력이 연왕편에 소속된 시점이다. 즉, 전황이 매우 불리하자 연왕군에 맞서 싸웠던 세력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태종은 귀부하는 만산군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명에 대해서는 국경 근처에 도적이 출몰하는데 명의 관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탕하지 못한다고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⁶⁸⁾ 당시 조선에 출래한 명사 축맹헌에게 만산군의 수용을 숨기고 대신 도적이 출몰하는데, 명의 관군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축맹헌이 정요위에 이 사실을 공문으로 전달하려고 하자 정요위 군대가 조선 국경근처로 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출동하기에 지형이 험하다는 이중 외교활동도 전개하였다.

태종은 만산군의 수용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만산군을 방치하면 조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앞서 만산군의 우두머리 林八刺失里는 조선의 西北面察理使가 보낸 사신에게 정요위의 많은 군관들이 연왕측에 붙었음과 수용해주면 각지에 흩어져

66) 『태조실록』 권 6, 태조 3년 11월 을묘: 권8, 4년 11월 병인. 홍무제는 연왕에게 鞍馬를 附送한 조선에 대한 경고의 조치로 통사 宋希靖과 押馬 權乙松을 유배시켰다.

67) 『정종실록』 권 1, 정종 1년 3월 임신.

68) 『태종실록』 권 3, 태종 2년 3월 기유: 4월 무진.

〈표 2〉 명 '靖難之役' 기간 중 出來한 明使

使行(歸還)時期	正使	副使	通官	備考
1401/02/06 (1401/02/30)	陸顯 (禮部主事)	林士英 (鴻臚行人)		태종을 칭찬하는 建文帝의 詔書를 가져옴
1401/06/12	章謹 (通政寺丞)	端木禮 (文淵閣待詔)		誥命과 印章을 가져옴
1401/09/01 (1401/12/16)	祝孟獻 (太僕寺左少卿)	陸顯 (禮部主事)	獸醫: 王明, 周繼	말 1만필의 무역을 위해 출래함. 말무역에 관련한 兵部의 咨文을 가져옴
1401/09/15 (1401/10/5 -11/11)	宋鎬, 相安, 王威, 劉敬(國子監生)			文綺-緝-綿布 9만여필과 약재 등을 말값으로 가져옴 10/5일 監生 王威이 初運馬 1,000필 압령함 10/16일 監生 劉敬이 二運馬 1,000필 압령함 10/28일 監生 宋鎬가 三運馬 1,000필 압령함 11/11일 監生 相安이 四運馬 1,000필 압령함
1401/11/24 (1401/12/09)	郭瑄, 柳榮 (國子監生)			말값으로 비단을 가져옴
1402/01/24 (1402/05/20)	端木智 (兵部主事)	栗堅 (國子監生)	周繼(獸醫)	말무역을 하기 위해 出來함
1402/02/19 (1402/03/20) 1402/04/10 (1402/05/20)	祝孟獻 (太僕寺左少卿)	董遲, 柳榮 (國子監生)	王明(獸醫)	太僕寺少卿 孫奉이 兵部의 咨文을 가지고 요동에 이르자 祝孟獻이 말무역을 위해 다시 조선에 出來 2/29일 監生 柳榮이 五運馬 1,000필 압령함 3/23일 監生 董遲가 六運馬 1,000필 압령함
1402/02/26 (1402/03/04)	潘文奎 (鴻臚寺行人)			황제가 하사한 冕服을 태종에게 전달함
1402/03/19 (1402/05/01)	栗堅, 張緝 朱規(國子監生)			말값을 가지고 요동에서 出來함. 七運馬를 압령함
1402/10/12	俞士吉 (都察院僉都御史)	汪泰 (鴻臚寺少卿) 溫全, 楊寧 (內史)	省親하는 內官 鄭貴 등 3인	永樂帝의 登極과 새 年號의 詔書를 가져옴. 溫全과 楊寧이 金若恒(새 아내를 얻어 살아있음)과 鄭應, 盧仁度(병들어 죽었음) 등의 사정을 알려줌

살며 조선을 보좌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만산군의 귀부를 수용하는 문제는 명과의 외교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전황상으로 궁지에 몰린 남경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태종은 1차적으로 판단하였다. 만산군을 쇠환하라는 명 좌군도독부의 문서가 조선에 전달되었지만, 태종은 이를 무시하였다. 태종은 만산군 869명을 豊海道에 나누어 거주하도록 하고, 지방관으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뒤이어 경상도에 1,297명, 충청도에 854명, 左·右道에 488명, 전라도에 1,585명을 나누어 거주하도록 하였다.⁶⁹⁾ 태종의 만산군 쇠환거부는 궁극적으로 만산군을 받아들일겠다는 판단이 아니라 군사외교적으로 만산군을 활용하고자 하였던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명의 보다 강력한 쇠환요구가 조선에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쇠환에 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명의 교를 추진하려는 의도였다. 이는 명의 사신이 조선에 출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各道에 移文하여 요동에서 도망하여 온 군인을 推刷하여 林八刺失里를 요동으로 압령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락제는 정난을 수습한 뒤 곧 만산군의 귀환을 독려하는 칙서를 조선에 전달하여 만산군의 쇠환을 조선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때 조선은 명 사신의 접대에 있어 조서와 칙서의 영접의식 차이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명의 쇠환요구에 처음 소극적이었던 자세는 만산군의 많은 숫자가 원래 조선인이었다가 요동으로 넘어간 인물들로 전란과 흉년을 피해왔기 때문에 인정상 잠시 받아들여 안정시킨 것이며, 차후 이들이 추격하는 瀋陽과 開原의 군사들을 많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쇠환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명에 전달하였다.⁷⁰⁾

이 당시 조선에 도망온 만산군은 대체로 동녕위, 參萬衛, 遼海衛 등의 군역에 소속된 군인들로 건문연간에 도망하거나 開原 등지에서 방비하는 병력들이었으며, 조선으로 넘어올 때 대부분 軍器를 가지고 들어와 숨어 지냈다. 도망과정에서 추격하는 연왕군과 교전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69) 『태종실록』 권 3, 태종 2년 5월 을미; 임자; 권 4, 9월 정유.

70) 『태종실록』 권 4, 태종 2년 12월 임술; 임신; 권 5, 3년 1월 신묘; 임진.

태종은 이를 근거로 만산군을 쇠환한다고 한 것이다. 태종은 명에 대해 도군의 쇠환을 강력하게 시행하였음을 천명함과 동시에 혹여 쇠환숫자의 차이점은 조선의 국경내로 들어오지 않은 이들을 쇠환하기 어렵고, 들어왔더라도 깊은 산속에 숨거나 의복과 생김새가 별반 차이가 없어 쇠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⁷¹⁾ 조선의 만산군 쇠환과 쇠환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명은 상당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지속적으로 추가 쇠환을 요구하였다.⁷²⁾

태종대 만산군 쇠환과정을 살펴보면, 명 사신의 출래와 동시에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만산군이었던 임파라실리 등을 쇠환한 이후 일련의 쇠환과정을 거쳐 만산군 남녀 3,649명을 정리하여 쇠환하였다. 실제 태종은 도망군사를 모두 쇠환할 의사는 없었으며, 명에서 제시하는 명단에 따라 이들만 쇠환하고자 하였다.⁷³⁾

태종은 1403년 3월 2차 만산군의 해송을 알리는 주본을 명에 전달하였다. 만산군민의 총계 13,641명 가운데 1차로 남녀 10,920명, 도망 중 2,225명, 病故 496명이었다. 명의 추가 쇠환요구를 접하면 조선은 같은 해에 일정한 쇠환절차를 거쳐 추가로 쇠환하였다. 4월에 만산군 남녀 60명, 11월에 만산군 230명과 153명을 쇠환하였다. 이어 다음해 12월에 도망한 군인 金加勿 등 남녀 28명을 요동으로 보냈다.⁷⁴⁾ 이 시점까지 명에서 파악한 만산군 현황은 쇠환인원 10,755명, 미쇠환 인원 東寧衛소속 全者遂 등 4,940명이었다.

조명간에 만산군 쇠환이란 군사외교가 전개되면서 조선은 당면한 외교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자책봉이었다. 건국 이후 태조, 정종 등이 모두 誥命을 받지 못하는 등 封典문제가 조선의 입장에서 중요 외교현안 가운데 하나였다.⁷⁵⁾ 태종은 만산군 쇠환을 점진적으로

71) 『태종실록』 권 5, 태종 3년 1월 신묘; 권 6, 8월 계유.

72) 『태종실록』 권 6, 태종 3년 10월 임술.

73) 『태종실록』 권 5, 태종 3년 1월 을사; 2월 정묘.

74) 『태종실록』 권 5, 태종 3년 3월 기해; 4월 신미; 권 6, 11월 신축; 권 8, 태종 4년 12월 임진.

75) 김경록,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2006. 28~29쪽. 봉전의 외교사안 성격에 관한 연구는 김경록, 「동문회교를 통한 조선후기 외교사안 연구」, 『명청사연구』 32, 2009. 참조.

수용하면서 명으로부터 11세의 세자 禔의 책봉을 수월하게 받고, 영락 3년의 『大統曆日』 100본과 黃綾面 1본을 頒賜받았다. 또한, 조선인으로 표류하였던 錢尙仔·崔伯可·李鐵里·丁參·丁肆·車甲 등 6명이 귀국하게 되었다.⁷⁶⁾

명은 1406년 3월에 內官 鄭昇을 파견하여 만산군의 쇄환을 거듭 강요하였다. 이에 조선은 8월에 419명의 만산군을 쇄환하였다. 거듭되는 명의 요구에 대해 조선이 소극적인 쇄환으로 대응하자 명은 요동을 담당하는 좌군 도독부, 요동도사, 병부, 예부 등 광범위한 관서를 동원하여 만산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이고 강력한 쇄환을 요구하였다.⁷⁷⁾ 귀환한 만산군을 심리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잔여 만산군을 파악하고, 요동도사를 비롯한 변경의 다양한 정보경로를 활용한 점에서 명의 쇄환요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산군의 쇄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주위의 여진족이 요구한 여진족의 쇄환까지 요구하였다. 즉, 명나라의 요동 만산군 문제에서 여진족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조선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은 동녕위 군인 仝者濬 등 잔여 만산군의 명단을 통보하여 쇄환을 압박함도 동시에 건주위 여진만호 修鎖魯阿가 명에 요구한 조선에 거주하는 가족 64명을 건주위로 이주시켜 줄 것과 건주천호 失加가 요구한 13가족의 解送을 조선에 강요하였다.⁷⁸⁾ 이때 명분은 천륜과 인정이었다. 조선은 대명관계에서 군사외교가 새로운 측면으로 확대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진족 송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만산군 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선은 무엇보다 만산군의 쇄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조명관계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100~200명 수준의 쇄환에서 500~2,000명 수준으로 쇄환을 확대한 것이다. 우선 명 사신을 직접 만산군 거주지에 방문하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쇄환하는 만산군의

76) 『태종실록』 권 9, 태종 5년 3월 임자.

77) 『태종실록』 권 11, 태종 6년 3월 기유; 권 12, 8월 계묘; 권 12, 12월 정미.

78)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1월 신사.

규모를 확대하여 1407년 3월에 劉山城 등 2,000명, 5월에 746명, 6월에 831명, 8월에 549명 등을 송환하였다. 조선의 관노였다가 身役을 피할 목적으로 요동에 도망하였다가 돌아온 39명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의 이러한 외교적 대응은 구체적인 만산군 출신을 검토하지는 의미도 있지만, 조명간에 만산군문제가 여진족문제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차단을 목적으로 한 공세적인 외교활동으로 분석된다. 여진족의 송환에 대해서는 43명을 송환하는 수준에서 대응하였다.⁷⁹⁾

또한, 조선은 만산군 송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명에 제시함으로써 조선의 송환노력을 과시하였지만, 명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졌다. 1407년 명은 만산군에 관련하여 조선에 또 다른 요구를 하였다.⁸⁰⁾ 명은 조선의 송환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洪武年間に 五丁塚의 土軍으로 付籍한 人數가운데 송환되지 못한 만산군 2,829명을 조선에서 오래된 鄉戶와 奴僕이라고 날조하여 송환하지 않음을 질책하며 전원을 요동도사로 송환하라는 요구사항과 함께 명에서 필요로 하는 馬匹 3,000필을 교역하라는 강제사항이었다. 조선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명은 만산군 송환을 요구하면서 여진족의 송환까지 거듭 강요하여 조선을 압박하였다. 조선은 명의 요구에 부응하여 각지에 경차관을 파견하면서 명나라 사신이 데리고 온 역사한 사람씩을 대동하여 조선의 송환노력을 증명하고, 4월에 781명, 5월에 159명, 7월에 99명, 9월에 114명 등을 송환하였다.⁸¹⁾

1408년 대단위 송환을 마지막으로 만산군에 관련한 일단의 송환이 정리되었다고 판단한 조선은 9월에 그동안 만산군 송환에 관련한 총 정리된 외교문서를 명에 전달하였다. 조선에서 제시한 송환현황은 여진족 송환이라는 외교적 압박수단이 동원되면서 명이 요구한 만산군 송환으로 명의 병부에서 제시한 인원은 1,100여 명이며, 조선에서 쇄환한 1,153명을 4차례에

79)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2월 정미; 3월 계유; 4월 계묘; 5월 정축; 6월 병술; 권 14, 8월 기축.

80)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8월 임진; 경술; 9월 경신.

81)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2월 병술; 기축; 4월 갑진; 5월 기미; 권 16, 7월 임술; 9월 갑술.

결쳐 송환하였다는 내용이었다.⁸²⁾ 이러한 조선의 적극적인 송환으로 전환은 여진문제로 만산군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만산군문제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외교적 실리를 일정하게 거두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소수의 만산군이 조선으로 도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조명간에 중요 외교사안은 아니었다. 이미 만산군, 즉 군인송환이라는 군사외교로서의 외교사안은 위급함과 사안의 중대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명은 북경천도 및 북정 등을 통하여 영락제의 통치체제가 안정화되었으며, 효과적인 여진족의 회유 및 몽골세력의 제압으로 요동통치의 위협사항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이후 소수의 만산군이 유입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없는 일상적인 국경의 문제가 되었으며, 여진족 가운데 국경주변의 여진족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명의 위소로 편입된 여진족이 조선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단적인 예로 1409년 이후 요동군인이 조선으로 들어오면 수효가 적고 몰래 온다면 받아들이고, 다수가 무장하여 들어오면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조치한 점, 왜의 포로였다가 탈출한 명 군인을 명으로 송환하려고 하니 이들이 혹 조선에 남아있는 만산군을 보고할 것을 염려하여 송환하지 않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³⁾

82) 『태종실록』 권 16, 태종 8년 9월 갑술.

83) 『태종실록』 권 18, 태종 9년 11월 무인; 권 25, 태종 13년 1월 정미.

5. 맺음말

원 중심 조공체제에서 명 중심 조공체제로 전환되었던 여말선초는 국제 정세의 급변과 함께 요동을 중심으로 군사외교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였다. 조선초기 군사외교는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정치, 외교적 안보의 담보라는 국가목표에 따른 원만한 대명외교의 전개와 북방의 군사적 안정이라는 외교목표 및 국방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결정된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군사부문의 대외적 군사교류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명 중심 조공체제라는 시대적 성격에 따라 조공제도를 준수하면서도 조선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의 한 부분으로 조선은 군사외교를 전개하였으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만산군문제, 여진족문제 등 다양한 군사문제가 대두하였다. 이 가운데 영락제의 등극과정에서 대단위로 발생한 만산군문제는 조선초기 대표적인 군사외교문제였다. 조명관계에서 명의 요동경략으로 조명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조명간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은 양국의 국내, 국외적 상황에 의해 없었으며,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조명간 군사외교는 외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조명간에 군사협력의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하거나 도망한 군인이나 표류한 군인의 송환 등을 통해 군사외교를 시행하였다.

당시 군인송환은 기본적으로 범월을 전제로 하며, 조공체제에서 범월이나 월경에 대해 송환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점에서 태조대 시작되어 태종대 정점에 있었던 만산군은 송환할 수밖에 없었지만, 조선은 송환의 시기, 규모, 성격 등을 외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인 군사외교를 시행하였다.

정난지역을 통해 건문제와 전쟁을 수행하던 연왕은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군사적,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조선은 이 과정에서 태종의 고명을 받아내는 외교적 실리를 취하였다. 명은 전통적으로 도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병부에서 담당하였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취급하였다. 더욱이 명은 법규상으로 국경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주지역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명 중심 조공체제하에서 조선에서 명으로 송환되는 군인은 도군, 피로되었던 군인, 표류군인 등이었으며, 도군의 대표적인 사례가 만산군이였다. 현재까지 송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사행 절차 및 부분적인 송환사례를 정리하면 명의 병부를 통해 만산군 현황이 보고되면, 황제명의로 조선에 송환을 강요하고, 조선은 송환요구에 대해 현지 조사를 통해 쇄환하고 이를 요동으로 압령하였다. 압령된 인원은 요동 도사에서 구체적인 심리 및 점검을 통해 확인하여 마무리되었다.

만산군이 정난지역의 와중에 조선에 대규모로 넘어온 것은 태종 2년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만산군의 유입이 있었으며, 조선은 이들을 전국에 나누어 거주하도록 하였다. 영락제의 등극과 동시에 만산군문제가 조명간 군사외교문제로 등장하자 조선은 송환의 시기, 규모, 성격 등을 조절하여 당시 외교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다. 만산군문제 발생 초기에는 영락제의 정세불안을 이용하여 만산군을 수용하는 군사외교를 취하였으며, 영락정권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세자책봉의 외교성공을 취하며 점진적인 송환을 시행하였다.

조선의 소극적인 만산군 송환에 대해 명은 여진족의 송환까지 강요하며 조선을 압박하자 조선은 만산군문제를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군사외교를 시행하여 태종 8년 잔존하던 만산군을 대규모로 송환하여 마무리지었다. 이후 소수의 도군문제가 있었지만, 조명간 주요 군사외교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 군사외교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개념정의, 성격분석, 전개과정, 분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군사사의 제 분야가 조명간 군사적 갈등, 협조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전쟁, 군사정책, 무기체계의 발달, 병법의 발전, 군사사상 등이 보다 풍부하게 규명될 것이다. 단순히 국내적인 상황 및 제도변화에 주목하였던 기존 군사사연구의 한계를 넘어 보다 명확한 역사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변혁기 건국과 안정화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군사문제는 결코 국내적인 관점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명

중심 조공체제하에서 국제정세 변화와 대외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원고투고일 : 2012. 3. 27, 심사수정일 : 2012. 5. 15, 게재확정일 : 2012. 5. 18)

주제어 : 군인송환, 만산군, 군사외교, 명 중심 조공체제, 외교목표, 도군, 조명관계, 범월, 월경, 군사목표

<ABSTRACT>

The Issue of Soldier Repatriation and the Military Diplomacy between Joseon and Ming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Kim, Kyeong-lok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were a time when an international tribute system centered on Yuan was replaced by an international tribute system centered on Ming and with the uncertainty in the situation around Liaodung region, the related parties engaged in fierce military diplomacy. The early Joseon period's military diplomacy was focused on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order to carry out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by pursuing the diplomatic and military goals of maintaining peaceful relationship with Ming, military stability in the northern frontier and establishing Joseon's legitimacy and national security.

Joseon staged active military diplomacy in order to further national interest and continues tribute system, which were inevitable at the time. At that time, Mansan-gun problem, Jurchen problem and other military problems emerged with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 extensive Mansan-gun problems which occurred when Emperor Yeon'rak.

The risk of Joseon-Ming military collision was big, intensifying the capture and rule of Liaodung by Ming, but in reality it rarely jeopardized the Joseon-Ming relations. The real military collision in the Joseon-Ming relations was unrealized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of the two countries. By using diplomacy, the two countries solved the problem. The military diplomacy between Joseon and Ming was at the heart of the disputes. Joseon and Ming cooperate militarily, repatriate runaway soldiers and drifting soldiers.

At that time, the issue of soldier repatriation was highly complex and

political. In an international tribute system centered around Ming, the soldier repatriations were based upon the premise of beomwul(犯越) and wulkyeong(越境). Runaway soldiers were repatriated without fail. In this regard Mansan-gun which began during the Taejo period and was at its height during the Taejong period, had to be repatriated but Joseon carried out successful military diplomacy by manipulating the time, size and cause of the soldier repatriations.

Keeping an eye on Joseon during the process of a battle over the Imperial Throne, the Ming had taken a variety of measures to eliminate the diplomatic-military threat. In this process, Joseon made a diplomatic benefit to obtain Gomeong(誥命) from Ming. In legal formality, Ming prevent breakaway from a residential district and the country, and took firm action against runaway soldiers. On this account, Ming recognized that soldier repatriation was main duty of Beongbu(兵部).

Joseon dispersed Mansan-gun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was not forthcoming in repatriating Masan-gun to Joseon made a diplomatic benefit to obtain Gomeong(誥命) and the investiture of crown prince from Ming. Ming demand pressed for the repatriation of Jurchen tribes. Responding to Ming's strong demand, Joseon enforced repatriation. The early Joseon period's concept of soldier repatriation was related to an international tribute system centered around Ming. Joseon maintained a flexible soldier repatriation policy, tak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Joseon-Ming relations into account.

Key Words : Soldier Repatriation, Mansan-gun, Military Diplomacy, International Tribute System Centered around Ming, Diplomatic Goal, Runaway Soldiers, the Joseon-Ming Relations, Beomwul, Wulkyeong, Military goal